

2025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모집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2025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 1. 1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I 사업개요

1. 사업명 : 2025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 참여대상 : 제주도 내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인증 사회적기업

3. 참여제외 대상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최저임금 이상 지급여부 등 확인
-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험료의 일부·전부를 지원받은 기업
 -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여부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 조회를 통해 확인
 - * 정부지원금과 관계없이 사업주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을 통하여 임금이 결정되는 바우처 제공기관, 장기요양보험기관은 중복지원이라 볼 수 없음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지원제외 대상

- 대표자·등기임원 및 대표자·등기임원의 친족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 | |
|-----------------------|----------------------|
| ①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 ② 대표자·등기임원의 형제자매 |
| ③ 대표자·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 | ④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형제자매 |
| ⑤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지원대상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지원가능하나, 그 근로자의 친족은 지원 제한

- 사회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임의로 미가입된자

- 국민연금 연령 제한 등 사회보험별 운영 정책에 따라 일부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자는 적용되는 보험료에 한해 지원

* 만 65세 이상이라도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이므로 가입 확인 후 지원

→ 만 65세 이상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의 경우, 고용보험(실업급여)는 적용제외, 고용보험(직업능력·고용안정)은 가입 대상

5.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예산 소진시까지, 기업당 최대 50명

○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 임금체불이나 보험료 체납 시 지원금 지급보류, 체불임금을 청산하거나 보험료를 납부 완료 후 소급하여 지원

○ 지원수준 :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고용보험 능력개발·고용안정 (0.25%), 산재보험 (0.6%)

-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고시된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 '25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10,030원,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고용보험 이종 취득으로 신청 사회적기업이 아닌 다른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산재·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지원

- 지원한도 : 4대보험 모두 가입 시 1인당 약 월 214,540원

* '25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10,030원,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임금의 10.25%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보험 1인당 월 23,780원(≒10,030원 * 209시간 * 1.15%)<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보험(실업급여) 1인당 월 18,540원(≒ 10,030원 × 209시간 × 0.9%), 고용보험(직업능력·고용안정) 1인당 월 5,240원(≒ 10,030원 × 209시간 × 0.25%)* 통상, 만 65세 이상 고용보험 신규취득자는 직업능력·고용안정만 납부하므로 1인당 월 5,240원(≒ 10,030원 × 209시간 × 0.25%)· 산재보험 1인당 월 12,577원(≒10,030원 * 209시간 * 0.6%)· 건강보험 1인당 월 83,851원(≒10,030원 * 209시간 * 4.0%)<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건강보험) 1인당 월 74,313원(≒ 10,030원 × 209시간 × 3.545%),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 1인당 월 9,538원(≒ 10,030원 × 209시간 × 0.455%)· 국민연금 1인당 월 94,332원(≒10,030원 * 209시간 * 4.5%)<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0세이상으로 국민연금이 적용 제외되는 자는 고용·산재·건강보험료(지원한도 118,470원)만 지원* 만 65세 이상 취득으로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 보험료만 부담할 경우에는 고용보험 해당 부분·산재·건강보험료(지원한도 99,930원)만 지원* 고용보험 이종 취득으로 해당 사회적기업이 아닌 다른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산재·건강·국민 연금(지원한도 187,510원)만 지원 |
|--|

6. 지원기간 : 해당사업 예산소진시까지

- 기존 사회보험료 지원 기업의 경우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4년은 지원개시일로부터 연속의 개념임

Ⅱ 지원금 신청 · 접수

1. 접수기간 : '25. 1. 13. ~ 1. 30.

2. 접수방법 :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방문,우편

-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064-728-7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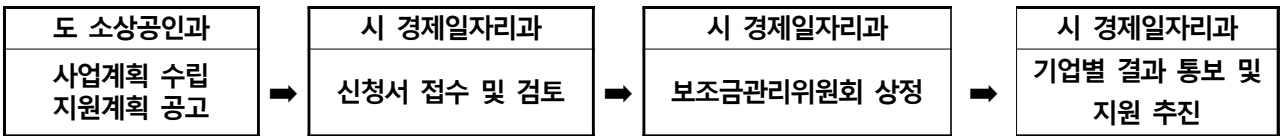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 9길 17, 3별관 2층 경제일자리국 경제소상공인과

-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064-760-2613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05, 1청사 본관 2층 농수축산경제국 경제일자리과

3. 지원절차

- 사업참여기업은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관할 시청(경제일자리과)로 제출



Ⅲ 제출서류

1.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붙임 제1호서식]
2.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1부(처음 신청 시, 통장 변경 시)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4.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최초 제출시) [붙임 제2호서식]
5. 보조금 지원신청서 서식 [붙임 제3호서식]

Ⅳ 기타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자 및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유용·횡령한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

2. 보조금 지원 관련 서류(회계서류 일체)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이 확인 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다음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담당부서 | 연락처 | 비고 |
|-------|---------|--------------|----|
| 제주시청 | 경제소상공인과 | 064-728-7513 | |
| 서귀포시청 | 경제일자리과 | 064-760-2613 | |

❖ 구비서류:

1.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1부(처음 신청 시, 통장 변경 시)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3.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최초 제출시)
 - ※ 임금대장(자체 고용근로자 포함)은 시스템에 입력 또는 업로드 필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5년의 범위내에서 지급제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 1) 사업분야 구분
 -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 2) 최초지원일
 - 예비사회적기업: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 지원개시일
 -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사회적기업 인증 전 예비 자격으로 지원받은 내역도 작성)
- 3)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 4)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 5)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 예시: 사회보험료지원(두루누리사업)을 받을 경우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사업장 참여자격 및 자격유지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 1. 근로자가 4대보험에 누락없이 모두 가입되었나요 | <input type="checkbox"/> 예 |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 2. 4대보험료 체납이 있나요 | <input type="checkbox"/> 예 |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 3. 임금등 체불이 있나요 | <input type="checkbox"/> 예 |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 4. 참여근로자중에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나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있나요 | <input type="checkbox"/> 예 |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 5.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나요 | <input type="checkbox"/> 예 |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 5-1. 지원근로자 중 대표자, 등기임원 친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친족 등 참여자격 제한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보고하여야 함을 아시나요 | <input type="checkbox"/> 예 |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 6. 참여근로자중에 관련기업에서 퇴직한 자가 있나요 | <input type="checkbox"/> 예 |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 7. 참여근로자중에 등기임원이나 회원이 있나요 | <input type="checkbox"/> 예 |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한다.

대표자: _____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 성 명 |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 전 화 번 호 (휴 대 폰) | |

보조금 지원신청서(원본 스캔하여 JPG로 첨부)

| | | | | | |
|---|------------------------------|--------------------------|-----------------------|-------|--------|
| 신청인 | 단체명 (법인명) | |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선택) | | |
| | 소재지 | | (우편번호 :) | | |
| | 대표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선택) | | |
| | | 주소 | 연락처 | 사무실 | 핸드폰 |
| 신청내용 | 사업명 | | | | |
| | 사업내용 | | | | |
| | 사업기간 | | | | |
| | 사업비 | | 천원 | 보조금 | 천원(%) |
| | | | | 자부담 | 천원(%) |
| | 동일사업 3년간 보조금 받은 금액(천원) | | 2022년 | 2022년 | 2024년 |
| 첨부서류 | |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 | | |
| <p>「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지방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직인)</p> <p>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p> | | | | | |
| <p>○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 항목 : 주민(법인)번호, 이름, 연락처(휴대폰번호), 주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 등 - 보관·이용기간 : 해당보조사업 지원 서류 보관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체크) | | | | | |

사업계획서(스캔 금지)

사업개요

- 사업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경비총액 : 천원(보조율 %)
- 보조금액 : 천원
- 자부담액 : 천원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 추진시기 | 세부 사업내용 | 비고 |
|------|--|----|
| | <p>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 내 행사, 프로그램 등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예시. 밀반찬 지원사업 참여자 : 새마을부녀회원 15명 나눔행사 : 기초생활수급자 20가구, 조손가정 20가구에 지원)</p> |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 산출내역이 불분명할 경우 심의제외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 ②예산비목 | ③금액(천원) | ④산출내역(기초) |
|--------------|------------|------------|--|
| 계 | | | |
| 해안변 환경정비 | 재료비 홍보비 | 500 630 | ·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 ②예산비목 | ③금액(천원) | ④산출내역(기초) |
|--------------------|------------|------------|--|
| 계 | | | |
| <작성예시> 해안변 환경정비 | 재료비 홍보비 | 500 630 | ·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

*산출내역(기초) 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단체소개서(스캔 금지)

[단체명 :]

| | | | |
|------------------------|---|------------------|-----------------------------------|
|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우 12345) | |
| | 연 락 처 | • 전화 : • 팩스 : | • 홈페이지 : • E-Mail : |
| 등록 및 인력현황 | 등록기관 | | 등 록 일 |
| | 대 표 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
| | 회 원 수 | | |
| 설립목적 |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 |
| 단체연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 |
| 예산현황 (2024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자원구성(100%) : 회비수입(%), 기부금 및 모금활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사업수익(%), 기타(%) | | |
| 주요사업 실 적 (2023년) |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 |
| 주요사업 계 획 (2024년) | | | |